

## 학교장(례) 규정

제정 2023. 11. 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 학교장(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대상자)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족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장례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현직 이사장 및 총장
2. 현직 교.직원으로서 현저한 기여를 하거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교.직원
3. 기타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제3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에 의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의 사무는 총무팀에서 주관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단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장례 집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례 및 추모 절차에 관한 사항

제6조(조의) ① 학교장 기간동안 대학 구성원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발인 당일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7조(경비부담) ① 학교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학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